

 보도 설명자료 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		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3. 3. 18.(토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종환 (044-202-7526)
		담당자	서기관 강나래 (044-202-7544)
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장(대) 배영일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 박형서 (044-202-7395)

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공정한 선출절차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,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선출·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·방해를 금지하였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3.18.(토) 한겨레, “노동현실 외면한채...과로 ‘자율개선’ 외치는 정부”

- (중략) 그나마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근로자 대표제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이 없는 한 외려 노동자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-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, 조사 대상 기업 586곳 가운데 42.8%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다. 40.6%는 ‘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’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.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한 경우도 13.4%였다.
- 그런데도 개편방안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할 ‘별치 조항’이나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노조 활성화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.

2. 설명 내용

- ‘22.6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‘근로자참여법’)을 개정(‘22.12.11.시행)하여 **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성을 강화**하였음
 -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‘근로자위원’)을 선출하는 경우 **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**하였고,
 - ‘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’의 선출방법을 근로자참여법에 **상향하여 입법**함

- 향후,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의 구성, 선출방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음
- 또한 3월 6일에 입법예고 된 「**근로기준법**」 개정안에서는
 -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,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고,
 -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음
- 아울러 **근로자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활동과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개입·방해하지 않도록** 규정하는 한편,
 -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**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**을 할 수 있고,
 - **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**을 부과하도록 ‘**별치 조항**’을 마련하였음